신성 안양 미소지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7. 9. 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순위 청약제한제도가 적용되며,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925 호 (2008. 05. 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86-8번지 외 1필지(15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6층~14층 3개동 115세대 중 일반분양 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세대(3자녀 특별공급) 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원)

구 분	아파트 코드 (일 반)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 택 형 (㎡)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 급 세대수	층별구분
				공 급 면 적							
				전 용	주거공용	소 계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민영주택	21913-01	2008000468(01)	109.7620	84.9412	24.8208	109.7620	51.6839 (49.1246)	161.4458	54.6977	24	6~14
	21913-02	2008000468(02)	153.5420A	115.6691	37.8734	153.5425	70.3808 (66.8956)	223.9233	74.4848	24	12~13
	21913-03	2008000468(03)	153.5420B	115.6691	37.8734	153.5425	70.3808 (66.8956)	223.9233	74.4848	9	9

주 택 형 (㎡)	층 별	세 대 수	세대당 분양가격(원)			계 약 금	잔금(95%) (입주지정일)
			대 지 비	건 축 비	합 계	계 약 시 (5%)	
109.7620	1층	3	122,181,522	177,468,478	**299,650,000**	14,982,500	284,667,500
	2층	2	124,754,408	181,205,592	**305,960,000**	15,298,000	290,662,000
	기준층	19	128,615,776	186,814,224	**315,430,000**	15,771,500	299,658,500
153.5420A	1층	2	160,385,630	261,004,370	**421,390,000**	21,069,500	400,320,500
	2층	2	163,761,648	266,498,352	**430,260,000**	21,513,000	408,747,000
	기준층	20	168,827,579	274,742,421	**443,570,000**	22,178,500	421,391,500
153.5420B	1층	1	160,385,630	261,004,370	**421,390,000**	21,069,500	400,320,500
	2층	1	163,761,648	266,498,352	**430,260,000**	21,513,000	408,747,000
	기준층	7	168,827,579	274,742,421	**443,570,000**	22,178,500	421,391,5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세대별 분양금액이며, 각 세대별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주택홍보관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기계 전기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 사업주체가 잠재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시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은 주택투기지역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포함)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 (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9.5 이후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 가능)됩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5. 15) 현재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아래표 참고)
(2) 우선순위배점표(배점 기준표 참조)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주 택 형	109.7620㎡	153.5420㎡A	153.5420㎡B	계
3자녀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대상)	1	1	1	3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특별공급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5. 20(10:00~15:00) / 당사 주택홍보관
–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 구비서류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5. 15)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는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비치)
(2) 주민등록 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3) 주민등록 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호적등본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혼은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합니다.)
(5)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합니다.)
(6)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진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3자녀이상) 신청서류는 7일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 합니다.
(7)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는 당사 주택홍보관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기준표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니다.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규정에 따릅니다(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전체를 당해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일반 공급
– 당 아파트는 2007. 9. 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5. 15)현재 안양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자.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청약예금 예치금액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구분	순 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전 주택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안양시/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5.20 (화)	주택홍보관 10:00~15:00	• 장소 : 주택홍보관 • 일시 : 2008. 5. 20 16:00
	1순위	공 통	• 가점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 •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008. 5.21 (수)	■접수장소:인터넷 청약이 원칙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ARS • 금융결제원 ☎1369 –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접수시간: 08:30~18:00	• 일시 : 2008. 5. 29 • 장소 : 당사 주택홍보관 ※ 당첨자명단은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1980년 8월 29일 이전 국민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5.22일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 1순위자로서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분		2008. 5.22 (목)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자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분 ②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소유 사실 포함)한 분(※주택 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③ 2002. 09. 05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기입자 포함)				
	2순위	공 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순 위	가 점 제	추 첨 제
1순위	1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2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2순위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
3순위	–	

2.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 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청약예금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 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이상 계속 소유(소유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년 8. 31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합니다.

3.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 점 항 목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①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감점점수(아래의"감점산정기준" 참고)			

4. 감점산정기준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기 준	소유주택수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 평형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 신청금	100만원	우리은행 본, 지점에 신청, 가능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일 발표 익영업일 (2008. 05. 30 10:00~16:30)부터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 · 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 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됩니다]
• 제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치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분양사무실에서 청약자의 입회하에 당첨자 및 동호수를 결정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에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
청약가점제	• 각 순위별, 지역별, 주택형별로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청약자에게 공급하며,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 청약자에게 공급합니다.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야 미 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시 당사 주택홍보관에서 별도 공고합니다. (단, 3순위까지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률이 120%미만인 경우에는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세대 발생시 이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을 따라 공급하되,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함.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에는 당사가 별도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서 순번에 포함되어 추첨을 통해 동 · 호수 배정을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일반공급분 당첨자 발표

• 일시 : 2008년 5월 29일 / 공고 : 당사 주택홍보관

■ 인터넷, KB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8. 5. 29 ~ 2008. 6. 5 (8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릅니다	
	전화번호	☎ 1588-9999(서비스번호 : 704)	☎ 1369(서비스코드 : 5#)
	이용시간	2008. 5. 29 ~ 2008. 6. 5 (8일간)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5. 29 ~ 2008. 6. 5 (8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5. 29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 2008. 06. 3 (화) ~ 2008. 6. 5 (목) / 3일간, 10:0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신성 안양미소지움 주택홍보관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6 현진빌딩 1층
– 문의전화 : (031)443-0205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계좌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 리 은 행	1005-101-298109	신성건설(주)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망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본 · 지점에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 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됩니다.

■ 계약시 구비 사항

구 분	계 약 시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ARS, 모바일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3 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